

아동 권리 이슈포커스 -7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7년 4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동의 목소리

Children's voices changing the world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아동 참여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공유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증진을 도모하고, 실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아동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이 생활하고 교육받는 일상의 환경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사회전반의 아동 참여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가정에서부터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와 같은 아동의 생활공간에서 아동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아동 의견 청취 창구가 제도화·의무화되어야 하며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사회 전반의 아동 참여권 이행 역량을 높이고, 아동참여의 긍정적인 사례가 발굴, 강화되어야 한다.

Situation |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돌봄을 제공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의 주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하게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동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한다.

참여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한다. 아동의 참여는 기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 아동의 시기에 참여의 권리를 누리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영위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목소리가 청취되고 수렴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아동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을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은 아동의 성장, 발달하는 능력에 따라 적절할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협약 제3조에는 아동과 관련된 입법, 사법, 행정기관 및 민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 참여권 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나 아동관련 정책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 청취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아동·청소년 법률에서 아동의 의견 청취와 관련된 내용은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등에서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 후견인 결정, 친권행사 제한, 친권상실, 입양 및 파양 등에 관하여 아동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 표명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법률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학교 환경 안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아동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참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국한하고 있어, 모든 연령의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개선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장으로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청소년 특별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기회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아동관련 NGO들이 이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일회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은지, 실질적인 아동 참여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체감하는 참여의 권리는 어떠할까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2016)에서 아동과 부모의 권리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동과 부모 모두 90% 이상 ‘그렇다’고 응답하여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관련하여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아동이 사회 및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모는 74.3%, 아동은 8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사회 참여와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동보다 부모가 아동의 사회참여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아동에게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아동의 3.7%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아동의 참여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의 의견표명과 참여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아동 참여 경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식증진과 함께 실제적인 권리이행 역량을 높이고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 참여에 대한 인식	아동		부모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가 있다	95.6	4.5	98.2	1.7
아동은 사회문제 및 정치문제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86.6	13.4	74.3	25.7
아동 참여에 대한 경험	아동			
	예	아니요		
아동의 정책 참여 활동(아동, 청소년, 학생 참여를 위한 위원회,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국가 기관에 전달해 본 경험)	3.7		96.3	

(출처: 굿네이버스, 2016)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참여의 권리주체로서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아동 참여의 권리 보장은 아동을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협약 제12조는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7조 정보권 등과 함께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의 참여 권리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동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아동의 의견이 연령이나 성숙도를 고려하여 적당한 비중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 참여의 권리는 제3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는 당사자인 아동일 수 있다. 아동의 의견청취는 성인이 알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동정책이나 제도에서 아동 의견청취 보장과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아동 및 청소년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근본 원리를 노르웨이 법률에 포함하고 행정구역 중 75% 정도가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정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각종 아이디어와 제안 사항을 내놓을 수 있는 워크숍, 공청회, 회의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노르웨이주한대사관 홈페이지, 2017. 3. 16. 검색). 이처럼 노르웨이의 사례는 아동의 의견청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는 학교시설 안전 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항이 신설됨.

 굿네이버스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참여의 경험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의미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Bozzer(2000)는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조직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아동은 참여과정이 자신의 사회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활동을 통해 아동은 자신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짐으로서 성취감을 느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철수, 2010; 김경준, 2011). 굿네이버스의 아동권리실태조사(2016)에서도 캠페인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 본적이 있거나 자신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직접 전달해본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인 의견 참여 활동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의견존중을 받아 본 경험은 아동의 행복감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활동은 자신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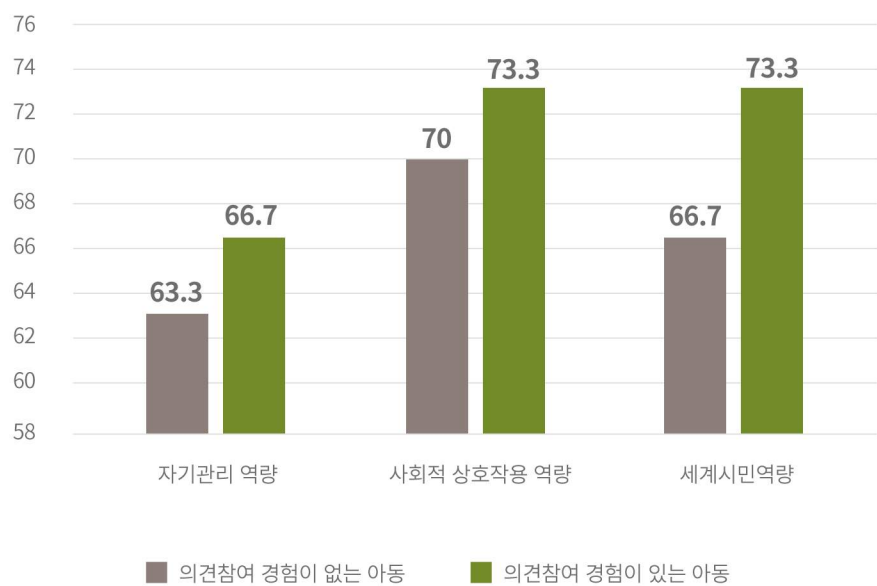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에의 동력

참여활동은 아동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여 아동이 미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다. Hart(1997)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술이나 책임감에 대한 경험 없이 성인이 되어 갑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성인으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보았다. 참여활동을 하면서 또래 및 성인참가자와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참여활동 자체는 아동에게 자연스럽게 권리인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실제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2016) 연구에서도 의견개진을 통한 참여 경험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기관리역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지구촌 문제에 책임 인식을 가지고 동참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자율적인 참여 경험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미래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즉, 아동의 참여권 행사 경험은 아동을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의견참여 경험과 아동의 역량



(출처: 굿네이버스, 2016)

Recommendations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가정에서부터 아동이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고 존중받는 경험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아동의 참여의 권리는 어느 특정 시기에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성장, 발달함에 따라 아동의 능력에 맞게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말을 할 수 없는 유아도 자신의 의견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는 어린 아동의 시기에는 지도 및 감독의 역할을 하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조언이나 지지의 역할로 전환하면서 아동의 참여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정 안에서의 참여는 가족 구성원 간 존중하는 태도, 의사결정의 참여 및 구성원의 의견이 적당한 비중으로 고려되는 경험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의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최초의 환경이자, 사회에서의 아동 참여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곳이 될 수 있다.

학교와 같은 아동의 생활공간에서 아동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의 교육환경 속에서도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고 적당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학습 방법에서의 아동 참여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아동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도 아동과 부모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규칙 제·개정 및 시행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를 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진학 및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최선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하고, 징계 시에도 아동에게 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시민사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 의견의 청취 창구가 제도화·의무화되어야 하며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아동의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 개인의 사법적, 행정적 절차 뿐 아니라, 아동 집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보건, 환경, 기타 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동 참여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동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 및 필요한 정보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에 대한 적당한 비중의 고려와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 전반의 아동 참여권 이행 역량을 높이고, 아동참여의 긍정적인 사례가 발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을 비롯하여 사회구성원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 및 아동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 이행의 책임이 있는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 아동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에 대한 협약 제12조의 실제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아동권리 교육의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의 교과과정, 아동관련 종사자 및 관계자의 자격 취득 및 보수, 연수 과정 등에 해당 교육을 포함하거나 부모교육을 제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참여를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적인 캠페인 및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한 모범사례가 사회 전 분야에서 꾸준히 발굴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Casestory | GOOD ACTION YOUTH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가들의 굿액션



굿네이버스 부산동부지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과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Smile 금정구’라는 주제로 굿액션유스를 기획하였고, 굿액션유스는 부산 금정구청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51명의 청소년 활동가들과 대학생 서포터즈 10명을 주축으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었다.

2016년 6월 발대식을 기점으로 청소년 활동가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직접 발로 뛰며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 활동가들에 의해서 제안된 정책은 부산 금정구청 및 그 외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유되었다.

청소년 활동가의 정책 제안

그룹	주제	방안
1	가로등 부족 - 구민 안전 지키기	압전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전기 공급
2	응급처치 교육 및 심장제세동기 수량 부족	학교 및 공공기관 의무교육 실시, 심장제세동기 확보
3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	청소년 문화시설 설립
4	다른 학교와 함께하는 토래상담	토래상담사 양성, 토래상담앱, 홈페이지 개발
5	길거리 간접흡연 줄이기	흡연구역 찾기 앱 개발, 흡연 부스 설치 및 확대

굿액션유스 활동 이후 부산 금정구청은 청소년 활동가들에 의해 제안된 정책을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적극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굿네이버스에게 전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또한 부산 금정구청은 청소년 활동가들의 정책 제안 내용과 관련된 교육청, 중앙부처 등에 정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되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친구들과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고민을 하니 정책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최예슬 청소년 활동가 (부곡여자중학교 3학년)



“굿액션유스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아동 참여의 권리를 보장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박혜영 대리 (굿네이버스 부산동부지부)

참고문헌 |

- 국가인권위원회(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130-140.
- 국가인권위원회(2016).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논평, 262-302.
- 굿네이버스(2016). 대한민국 아동의 현주소, 아동권리지수로 답하다. 2016 아동권리포럼자료집.
- 김경준·오해섭·정익중·오미선(201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4.
- 박병금·유은선(2011). 청소년의 권리인식과 자아존중감. 청소년학연구, 18(8), 89.
- 이혜원(200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4(3), 262-28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보건복지부 자료집, 24-26.
- Bozzer S. (2000). Youth Empowerment: A Qualitative Study. University of Manitoba. Master Thesis.
- Hart, R. & Schwab, M. (1997). Children's Rights and Building of Democracy: a dialogue on international Movement for Children's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3(1).
- 노르웨이주한대사관(2017) www.norway.no/en/south-korea 3월16일 검색